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52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528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484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환철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중

변론 종결2022. 10. 27.

판결 선고2022. 11. 24.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484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한 매매계약을 47,517,1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517,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는 C에게 ① 2015. 12. 4. 20,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26.9% 및 연체이자율 연 34.4%로 ② 2016. 8. 10. 2,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25.9% 및 연체이자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이후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51562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4. 'C은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27,650,955원과 그중 15,061,875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4%의, 1,765,2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6. 4. 25. C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금리 연 18.9%, 연체이율 연 19.9%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이후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29226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5. 2. 'C은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8,425,248원과 그중 7,267,659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20. 7. 27. 현재 C에 대한 원고의 위 각 승소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권 합계액은 47,517,117원이다.

라.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2016. 10. 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7.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위에는 2016. 3. 3.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등기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20. 6. 19.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됨은 물론, 수익자가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을 당시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진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위에 존재하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후 소멸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원물반환 대신에 그 가액상환만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7. 27. 현재 원고의 양수금 채권 합계액인 47,517,11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7,517,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으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3. C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 양도행위 없이 단지 명의신탁을 위하여 그 등기원인을 허위로 작출해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4호증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피고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였을 정도로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C이 피고의 주장을 거듭 반복하는 형태의 진술이어서 이를 선불리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조윤신

판사조미옥

별지